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6.11.23(수) 10:00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: 엄재창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## 3. 제안 이유

- 기존 조례에 명시된 각종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이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으로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으로 명칭 변경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각종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